

# 정보공개 관리기준

2020. 8. 6.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의하여 우리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전자매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공개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며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공개 담당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실무부서로 정보공개 처리주체가 되는 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정보공개 원칙)**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및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 2 장 정보공개 의무

**제 5 조 (정보공개 의무)** ① 기관장은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사 정보공개 주관부서 외에 사업소 기획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운영한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본사 및 사업소 정보공개창구의 역할을 하며,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보공개책임관·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본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주관부서 실무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청구업무 지원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처(실)·사업소의 주무부장으로 지정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당해 처(실)·사업소 내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 8 조 (정보의 사전공개)** 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 9 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① 회사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문정보가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절차

**제 11 조 (정보공개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 본사의 경우는 주관부서, 사업소의 경우는 담당부서 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별표1)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제 12 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을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회신기간(7일 이내)을 명시하여 이송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

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후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를 회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5일내에 “정보부존재통지”(별표6)를 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 1. 제11조의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 13 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2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3.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 14 조 (부분공개)** ① 청구된 정보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15 조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제 16 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 포함 5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정보공개책임관
2. 위원 :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이 있는 처(실)의 2직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2인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
3. 간사 : 정보공개주관부서 부장
4. 서기 : 정보공개주관부서 차장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서기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별표7) 및 “회의록”(별표8)을 작성 보관한다.

⑧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의뢰한다.

⑨ 심의회 개최 의뢰부서의 담당자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한다.

⑩ 심의회 안전의 처리결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⑪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회사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관련 사규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1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경우 관계직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우리 회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해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별표3)와 함께 해당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20 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불복절차

**제 21 조 (이의신청)** ① 정보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표4)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요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표5)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본사 정보공개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사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이의신청 통보를 접수한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 5 장 기 타

**제 24 조 (정보공개 처리현황 기록)**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표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무불이행)** 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한 사실이 청구인이나 제 3자에 의해 확인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정보 관리부서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정보 관리부서의 관련자 인사상 조치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20. 8. 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http://www.ope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수령 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수수료	[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유의 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표 2] 정보공개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표 3] 정보결정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 (①+②-③) 원		
납부 금액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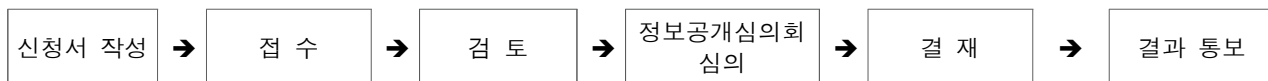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별표 5] 이의신청 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별표 6]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 (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7]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		주 소		
심의사항			주 관 부 서	
심의결과	○  ○  ○			
기타사항				
심의위원	직 위	성 명	공개여부	서 명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담 당	간 사	위원장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토의진행상황

■ 위원발언내용

### 비공개대상정보 분류 세부지침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계		209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2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8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8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9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22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3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소송	- 소송과정 중인 자료 일체 - 소송에 관한 공판 개시 전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공정한 소송 진행에 저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	공통
2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공통 감사실
3	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대한 조사, 통계 자료	- 통계법 -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4	금융거래	금융거래 내용 및 관련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사업금융부 기획처 관리처
5	개인정보 보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보안처
6	국민제안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 비공개 요구에 한정)	- 국민제안규정 - 제안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침해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7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의 과정이 담긴 내용	- 발명진흥법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침해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발전기술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8	민간투자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 내용 공고 및 입찰완료 전까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외사업처 사업소 공통
9	건강검진	소속 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 일체	-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의 신상정보(+6호)	안전품질처
10	정보예결산 편성, 배정, 집행	- 정보예산 및 관련 사업 일체 - 예산 배정, 지출한도 등 예측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 결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경영 내부회계규정 - 국가정보원법 - 국회법 -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기획처 관리처 사업소 공통
11	과태료 및 과징금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 공개 시 업무수행 저해 및 특정에 불이익을 줄 정보	공통 기획처 관리처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기본도(수치파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3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 - 내부검토과정으로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 감사 감사직무규정(사규) -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공통
14	업체의 재산 및 재무상황	- 업무수행 상 알게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15	세무조사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 지방세기본법 - 공개 시 자사의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관리처 사업소 공통
16	결손처분 및 취소	각종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	- 국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관리처 사업소 공통
17	수형사무, 신원조회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등의 기록	- 보안업무규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개인 신상정보(+6호)	보안처 사업소 공통
18	통신회선 통합관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공개 시 자사의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보안처 사업소 공통
19	출원공개되지 않은 디자인	- 출원공개되지 않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등록출원 및 심사중인 서류 -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한 디자인 서류	- 디자인보호법 - 공개 시 자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발전기술처
20	특허관련 사항	특허 및 출원관련 등록공고 및 출원 공개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서류, 심판, 재심 등의 계속 중인 서류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공개 시 자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발전기술처
21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처
22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사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개 시 자사의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안전품질처

##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보안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대외비 및 비밀관련 서류	- 보안업무규정 - 공개시 자사 보안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	보안처 사업소 공통
2	비상계획	- 대테러대비 전략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 전시 인력동원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 총무보안 및 비상규정 -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보안처 사업소 공통
3	을지훈련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 총무보안 및 비상규정 -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보안처 사업소 공통
4	총무계획	- 총무계획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보고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보안업무규정 -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보안처 사업소 공통
5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기본(안내)도 상의 국가 중요시설물 및 공개 제한 시설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 이익 침해 우려	관리처 사업소 공통
6	관계기관 요청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 등 비공개 요청 정보	보안처 사업소 공통
7	시설 설계도면	공공시설 등의 설계도면	- 보안업무규정 - 공공시설의 안전 및 보안 유지	발전운영처 / 건설처 사업소 공통
8	국방상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국방상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	- 국경정보화기반조성 및 국경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 이익 침해 우려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9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외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확산 등 외교문서	-기술연구개발관리규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법 - 상표법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발전기술처 사업소 공통
10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 등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1	보안지도점검	정보보안 수준 점검 및 지도활동 정보로 사전 공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보안업무규정 - 자사의 정보 보호 및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2	보안USB관리	보안USB관리상황 내역 일체	- 보안업무규정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3	행정통신시설 구축 및 유지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전산 보안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4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 현황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정보보안부 사업소 공통
15	전산보안	서버 및 단말기 현황, 정보보안 업무 계획, 심사분석, 암호장비 등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6	무선통신망	통신보안시설장비, 보안성 검토 등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    유	부    서
17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사이버침해사고 내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의훈련 등 사전 공개 시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18	디지털(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 및 무전기 관리	- 무전설비 검사 및 허가 - 단말기 자재수검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지장 초래	보안처 발전처 사업소 공통
이	하	빈	칸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범죄, 위법,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6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공통
2	방재, 방범 업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공통
3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전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측진단 체계 구축 자료 및 시스템 자료 등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발전처  보안처 안전품질처
4	발전소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 발전소 토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정보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처 발전처 안전품질처
5	건축허가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 개인정보보호법(+6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재산권 보호	건설처
6	주요 시설관리	-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 보안업무규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7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정조치, 결과검토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8	비상상황실 운영	비상상황실 운영 및 조직 구성 정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9	공간안전인증	공간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취득한 안전시설의 설계, 시공,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정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10	위기관리 매뉴얼	사업소 현장조치행동매뉴얼(SOP)에 근간 되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11	사업소 SOP 개정이력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현장 조취 행동 매뉴얼 등의 개정이력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관리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12	위험물 관리	- 위험물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사업소 공통
13	위험물 시설/장비	위험물질 저장시설 및 위험물 관리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도, 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민 및 공공의 생명, 재산 보호	사업소 공통
14	발전정비	- 정지 및 돌발복구	- 전력기술관리법 - 사고원인 및 대처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15	전력거래	- 전력거래 업무계획 - 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 입찰 자료 -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수익분석 기초 자료	- 전력기술관리법 - 공개 시 자사의 업무수행 및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발전운영처
16	도면	- 발전소 전체 시설물 도면 및 건설호기 자료	- 전력기술관리법 - 자사의 보안 정보	발전운영처, 건설처 사업소 공통
17	기술자료	발전소 기술자료 중 사전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규격서, 품질보증서 등	- 전력기술관리법 -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발전운영처, 건설처 사업소 공통
18	안전한국훈련 (소방방제청)	안전한국훈련 계획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9	발전소 고장조사위원회	- 발전소 고장조사 업무로 사전공개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설비이상 상황보고서 - 발전소 고장조사위원회 명단 및 의결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 공개 시 발전소 운영 및 감독, 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보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20	발전품질관리	- 정비 및 공사 절차서/지침서 - 기자재 계획서/절차서 - 기자재 구매규격서 - 하도급회사 품질능력 평가 - 정비적격업체 신청서, 평가내용 - 부적합사항보고서/시정조치요구서 자료	- 전력기술관리법 - 공개 시 자사 발전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보	발전운영처 건설처 사업소 공통
21	발전정지실적 대장 및 관리시스템	발전정지관리업무로 사전공개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발전소 정지관리 업무 세부기준 - 발전정지 조사서	- 전력기술관리법 - 공개 시 자사 발전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보	발전처 사업소 공통
22	시설보안 및 방호	시설보안에 필요한 방호, 경비, 순찰, 출입자, 사진촬영허가 내역 등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보	보안처 -비상계획부 사업소 공통
23	유지창고 운영관리	위험물취급관리에 관한 정보	- 위험물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사업소 공통
24	대관.민 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사전 협의자료 - 사후환경영향조사 - 민관공동조사단 활동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건설처 안전품질처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25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사용내역 - 취급설비 관리 및 지도점검 내역 - 화학물질 사용실적 및 배출, 이동량 조사자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사업소 공통
26	통합재난안전센터	통합재난안전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재난재해 사고 관리 및 대응대책 방안 연구자료 등 사전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27	무기고 및 탄약관리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보안법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사업소 공통
28	직장방호 대테러 훈련계획	을지훈련, 화랑훈련 등 대외훈련 지원 및 자체 방호훈련 관리 업무로 외부공개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려올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보안법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보안처 사업소 공통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수사정보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민법 - 형사소송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심리 보장	공통 감사실
2	심판, 소송	-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형사소송법 - 공정한 재판 및 심리보장, 부당 외압 방지	기획처 공통
3	자사 순찰 및 경비, 범죄 예방	- 자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순찰 일지 - 경비시스템 - CCTV위치, 장비명, 사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사 사육 등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유출로 범죄예방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안처 사업소 공통
4	소송관련 재산관리	공유재산 소송관련 소장, 준비서면 등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재산조회규칙 - 공정한 재판 및 심리보장, 부당 외압 방지	기획처 공통
5	범죄사건 및 감사결과 고발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자료 -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 민법 - 형사소송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공정한 재판 및 심리보장, 부당 외압 방지	공통 감사실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감사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li> <li>-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조사활동 관련 정보</li> <li>-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li> <li>- 인사신문고, 직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시키는 정보</li> <li>- 직무감찰 등 대상기관 선정,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감사직무규정(사규)</li> <li>- 보안업무규정</li> <li>-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li> </ul>	감사실
2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 집행관련 업무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공통
3	단속 및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감사실 사업소 공통
4	인허가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법인 등 사업계획, 생산기술, 신기술 등 공개시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개별 인허가신청서 및 법령 등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개인 및 법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불이익 초래</li> </ul>	공통
5	계약 및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li> <li>- 입찰, 견적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정보</li> <li>-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 평가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li> <li>- 공정한 계약 및 입찰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관리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6	심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및 평가 수행자, 지표, 방법 등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심사 및 평가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 중인 정보</li> <li>- 심사 및 평가 전에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li> <li>- 진행 종료된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관리처 사업소 공통
7	비위직무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감찰 계획 수립</li> <li>- 기동감찰반 명단, 감찰 경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li> <li>-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li> <li>- 감사 감사직무규정(사규)</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감사실 사업소 공통
8	각종 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li> <li>-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 부당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절 정보</li> <li>- 위원회 자료 중 이해관계인의 혼란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공통
9	정부경영평가	<p>정부경영평가 과정중인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후속조치</li> <li>- 경영평가 수검자료</li> </ul> <p>* 평가종료 후 내부기관 결정하에 공개되어도 무관한 경우 공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경영평가 및 분석규정(사규)</li> <li>- 보안업무규정</li> <li>-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 초래</li> </ul>	공통 기획처
10	ISO 인증 및 심사 업무	ISO 시스템 인증 및 갱신, 사후관리 심사 및 내부심사 과정중에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 초래</li> </ul>	공통
11	정보자원 관리계획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과정중의 자료로 사전 공개시 경영전략 및 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자사의 행정정보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li> </ul>	보안처 사업소 공통
12	내부평가지표 관리	사내 정보보안 관리수준에 대한 내부 평가지표자료로 공개시 정보보안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업무규정</li> <li>-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li> </ul>	공통 기획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1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내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보안대책 강구 및 정보화협의회 시행자료로 사전 공개시 정보보안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보안업무규정 -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자사의 행정정보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보안처 사업소 공통
14	법령 및 고시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기획처
15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경영 예산관리규정(사규) - 재무 회계규칙 시행세칙(사규)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기획처
16	운영관리	추진계획 및 전략 등 외부 공개 시 업무 무수행 및 창의적인 가치창출 등의 업무에 저해되는 정보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관리 지식경영평가·보상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지식경영에 지장 초래	국정과제 추진실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17	혁신활동 점검 및 평가	전사의 혁신체계 및 활동을 점검 평가하는 과정중의 업무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정보	- 관리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정과제추진실
18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로 사전 공개시, 원활한 업무진행 저해 및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리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기획처 해외사업처
19	제안관리 및 지식경영	제안활동 및 지식경영 추진계획 및 전략 등의 수립과정중에 있는 정보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관리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관리 지식경영평가. 보상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창의적인 사고에 지장 초래	국정과제추진실
20	신규사업 분석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성 분석(RM,PF,Tax), 사업리스크 관리 등 사전 공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리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사업분석 및 가치판단에 지장 초래	신재생사업처 해외사업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21	조직관리	부서별, 개인별 업무진단사항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관리	- 조직직제규정(사규) - 조직직무권한규정(사규) - 보안업무규정 - 조직관리의 공정성 저해 우려	기획처 사업소 공통
22	인사관리	- 직원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관련 정보 - 임용, 승진, 순위명부 등의 인사관련 사항 - 직원 근무성적평가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등 * 인사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 연수실시 결과는 공개	- 조직직제규정(사규) - 조직직무권한규정(사규) - 보안업무규정 -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6호)	관리처 사업소 공통
23	시험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및 채점, 합격자 결정과정 등	- 보안업무규정 -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6호)	관리처
24	노조업무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교섭결과, 요구서 등	- 보안업무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협상력 저하, 노무관리의 전략 노출	관리처
25	징계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의결과정 정보	- 조직직제규정(사규) - 조직직무권한규정(사규) - 감사징계양정요구에 관한지침(사규)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6호)	관리처
26	복무	불시점검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내역 등	- 보안업무규정 - 업무의 목적 및 실효성 저하	감사실
27	노동쟁의 조정, 협의	노동쟁의 협의관련 및 노동조합 정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협상력 저하 및 노조관련 업무 추진에 지장 초래	관리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28	유연탄관련 업무	- 유연탄 수급계획 - 유연탄 공급사 선정 및 업체 관리 - 유연탄 계약에 따라 도입량, 도입단가, 계약성상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선정 및 계약실행 등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29	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 및 분석	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과정중에 취득한 비밀정보 및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분석자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정보수집력 및 가치판단 등의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0	LNG, 유류 구매 및 계약	유연탄 외 발전용 연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등의 업무 중 외부 유출 시 원활한 계약 및 입찰에 곤란을 줄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선정 및 평가,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1	바이오연료 계약	바이오연료(우드펠릿, 우드칩 등) 등의 신재생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진행하는 계약과정 중의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선정 및 평가,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2	선박 계약 및 관리	장기용선 및 현물용선 등의 배분,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곤란을 줄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선정 및 평가,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3	유연탄 계약 및 사후관리	유연탄 계약 및 사후관리를 위해 도입량, 도입단가 등을 산정하는 과정 중의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선정 및 평가,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4	연료예산 및 결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계획 및 결산을 위한 실적관리	- 경영0400 예산관리 규정(사규) - 재무0110회계규칙 시행세칙(사규) - 보안업무규정 -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5	유연탄 통계관리	각 사업소별 입고탄에 대한 조달전략 수립을 위해 구축된 DB 중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영업상 비밀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36	물자수급계획	연간 물자수급계획 수립과정 중 사전 공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계획수립에 지장 초래	관리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37	직원 채용계획	증원, 결원, 충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용인원 등의 직원 채용계획으로 사전공개시 공정한 심사 및 평가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조직직제규정(사규) - 조직무권한규정(사규) - 보안업무규정 - 인사관리 및 채용의 공정성 저해	관리처
38	정원관리	정원의 신청 및 배부 등 사전 공개 시 정원조정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정원 조정과정 중의 자료로 사전 공개로 원활한 정원관리에 지장 초래	기획처
39	정보통신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신기술 적용 장비 중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자사 행정정보 보안에 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40	리스크관리	- 프로젝트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따른 리스크 평가, 수익률 산출 자료 -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검토 및 의결 중인 사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프로젝트 전략 수립 및 영업 비밀, 보안에 지장 초래	기획처 해외사업처
41	추진사업 선정	사업선정회의 및 사업개발 적합여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중의 사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기획처 해외사업처 신재생사업처
42	사업제안서 관리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세부 업무계획 수립 * 사업개발 착수 단계의 정보자료	- 관리0500 제안업무 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사고에 지장 초래	해외사업처 신재생사업처
43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정보	- 전력기술관리법 -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사업소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44	신,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	신, 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에 관한 지원방안, 계획 수립 등의 정보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전력기술관리법 -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45	발전정지 분석 자료	- 발전정지 통계 분석 자료 - 사업소별 심사 및 평가 자료 - 고장예방활동 대책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분석력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46	열수급 계약 관리	열공급을 위한 열수급조건 및 단가 결정 과정중에 있는 사안으로 사전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47	전력거래 입찰, 계량, 정산, 실적분석	발전실적 및 수익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전력기술관리법 - 공정한 계약업무 및 업무분석력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48	전력거래 수익전망 및 목표수익(SG)관리	전력거래 수익전망치 변화 관리 및 목표수익관리에 따른 정보로 공개 시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전력기술관리법 - 자사의 영업상 비밀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	-발전운영처
49	전력거래분야 예산 및 내부통제	전력거래 입찰 및 정산에 대한 절차 수행의 타당성 및 감사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사전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 예산관리규정(사규) - 재무회계규칙 - 시행세칙(사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원활한 거래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50	R&M(수명관리, 정비관리,기술 전략)사업	국내외 신사업 개발 및 수행을 위한 기술분야 지원 정보, 시운전 기술용역, R&M,O&M사업 기술표준화 등의 정보로 사전 공개 시 해당 사안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업무수행 및 정보분석력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51	연료/연소관리	석탄품질관리, 유기성고형연료 신규계약 발굴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연료/연소와 관련된 신규사업 창출 및 정보분석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52	연구개발	- 연구개발중인 용역, 과제, 신제품 및 신기술 - 연구기관의 기자재 및 시험장비 등의 지원 정보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과정 중의 정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관리제안업무규정(사규) -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사고, 정보분석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53	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및 사후관리	기성고 지급, 계약, 설계공정표 등 용역 검토 및 승인 등의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원활한 업무수행 및 정보 보안에 지장 초래	-건설처
54	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신규부지 발굴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신규사업 발굴 및 정보수집력에 지장 초래	-건설처
55	기술규격 확정업무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기자재 세부 성능보증 사항, 기술사양 및 설비 구성방안 등의 검토 및 보고 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건설처
56	계약특수조건 확정업무	계약특수조건 개정, 세부계약정보 및 조건, 규정 확정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건설처
57	신규 건설사업	신규 건설사업 총공사비 산정, 주요 공정, 주요설비 설치 계획 등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의 정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신규사업 발굴 및 정보수집력에 지장 초래	-건설처
58	건설관련 인허가	-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인허가 자료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양이용협의, 공유수면 매립 및 점용, 환경관련 인허가 자료 중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전원개발촉진법 - 전기사업법 - 인허가 과정중의 자료에 대한 공정한 내용평가 및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건설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 유	부 서
59	용역 추진	- 기술규격 검토의견서 - 기술평가 의뢰 - 기술사항 검토사항 - 종합설계기술용역 계약 정보 - 예산산출 내역 및 시행계획 - 용역 입찰서 평가계획 - 용역계약서 및 계약협상 - 낙찰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위한 입찰금액 배분 및 계약서 기술규격 작성, 기타 협의사항 서류	- 경영 예산관리규정(사규) -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사규)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원활한 업무추진 및 용역 사업 관리에 지장 초래	-건설처
60	절차서 및 업무매뉴얼 제개정	토목공사 및 인허가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 및 제개정 과정 중에는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건설처
61	계전분야 타당성 검토	신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및 기술검토 사항 검토 및 보고 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건설처
62	건설 공사비 운영 및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공사비 심의 및 확정설계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사업비 관리에 지장 초래	-건설처
63	건설 입찰평가	-입찰평가계획서 - 평가위원 선정 과정 중의 검토서류 및 평가위원 정보 - 입찰 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사 별 기술규격 적정성 판단 관련 검토 및 보고자료 - 건설공사 범위 확정 과정 및 예산산출 정보	- 경영0400 예산관리규정(사규) - 재무0110회계규칙 시행세칙(사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지장 초래	-건설처
64	건축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감사, 감독, 계약 관련 자료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건설처
65	건설기계/전기 분야 품질관리	기자재 검사 규격 확인 및 품질검사 계획서, 절차서 및 검토서	- 전력기술관리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건설처
66	통계적 공정관리	발전 공정관리의 각 공정별 통계관리 자료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자사의 영업 비밀 등의 중요 업무 정보	-건설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67	ERP품질 운영관리	- 기자재 품질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 품질보증 매뉴얼 검토 내역 - 기자재 및 업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부적합보고서	- 전력기술관리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안전품질처
68	정비적격업체 관리	정비적격업체 등록 대상인 신규 및 기존업체 개신 서류, 신청서, 심사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업체 관리에 지장 초래	안전품질처
69	발전설비 기자재 품질검사	- 발전설비 기자재 품질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 공장검사 입회서 및 성적서	- 전력기술관리법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안전품질처
70	제안 및 지식경영	업무지식의 제안활동에 따른 제반 자료로 사전공개 시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0400 연구개발 관리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 사고에 지장 초래	공통
71	공간안전인증	공간안전인증 사후관리 평가 내용 중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안전품질처 사업소 공통
72	폐수 및 수질관련 인허가	폐수 및 수질관련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원활한 인허가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73	과학화 보안설비 구축 및 운영	- 과학화보안설비용 CCTV, 울타리센서, 적외선 센서 신규구축, 보강 유지정비 공사 - 구매의 시행계획, 설계, 계약 과정의 내용 - 설비 유지정비용 및 수감자료	- 기술0400 연구개발 관리규정(사규) - 보안업무규정 - 해킹 및 사이버테러 우려, 보안설비 관리 등의 업무에 지장 초래	보안처 및 사업소 공통
74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기환경보전법 - 원활한 인허가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사업소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75	총량관리사업장 인허가	총량관리사업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원활한 인허가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및 사업소 공통
76	정보보안 실태평가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실태평가 업무로 사전공개시 공정한 평가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보안상태 점검 업무에 지장 초래	보안처 및 사업소 공통
77	비정상 설비 정상화 방안 수립	- 비정상 운전기기관리 - 상황보고서 - 기동정지 계획	- 보안업무규정 - 자사 설비보안 및 영업 관리 비밀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78	연소관리	- 연소시험계획 - 노내온도 및 노내점검자료 - 보일러 클링커 점검 및 분석자료 - 상탄설비 문서 - 제매설비 운전주기 설정 문서	- 보안업무규정 - 연소 관련된 각종 업무 중 연구자료, 계획 수립 등 정보분석능력 저해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발전운영처 및 사업소 공통
79	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 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계획 - 결과분석 자료 - 성능시험 시행관련 문서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성능시험 및 평가 업무에 지장 초래	발전처 사업소 공통
80	경비용역업체 관리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 자료, 제안서 및 용역경비원 애로사항 조사 자료 및 경비원 개인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정한 업체 선정 및 관리에 지장 초래	보안처 사업소 공통
81	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계약업체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서류로 사전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업체 관리 및 공정한 품질보증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82	신사업 발굴	신사업 개발관련 및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공개 시 창의적인 업무 추진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0400 연구개발 관리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신규사업 발굴 및 가치판단 등의 정보수집력에 지장 초래	신재생사업처 및 발전기술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83	건설공정 회의체 운영	- 사업추진회의(PRM) - 사업추진계획 - 계약수행에 따른 관련사별 협의, 조직구성, 추진방안 및 검토 자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건설공정 관련 자사의 영업상의 보안 정보	건설처 사업소 공통
84	사업소 기획	- 제안활동 내역 - 업무노하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원활한 제안활동 및 창의적인 사고판단에 지장 초래	공통
85	사업호 회계/결산	- 부정당업자 제제관련 자료(수감자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및 업체 영업비밀 정박(+5호)	공통
87	주요사업 진도파악 및 평가	- 성과지표 및 평가준비(정보, 보안 등) 관련 정보 - 성과평가 순위, 등급 등의 정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정한 성과지표 관리 및 평가업무에 지장 초래	기획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 유	부 서
88	환경감시설비(TMS) 운용 및 유지보수	환경감시설비 설치 및 관리내역 등 사전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환경감시설비관련 정보의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	공통
89	급전업무	중앙전력관제소(급전)와 관련된 업무 중 주요발전기 출력 변동 및 부가서비스(AGC 및 GF), 초기입찰 및 변경입찰 자료 등 사전공개 시 전력수급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입찰 및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 초래	공통
이	하	빈	칸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개인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li> <li>-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li> <li>-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li> <li>-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li> <li>-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li> <li>-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li> <li>-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li> <li>-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li> <li>-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li> </ul>	공통
2	인적사항	<p>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li> <li>-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li> </ul>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름,계좌,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 식별정보	공통
4	감사, 징계	감사결과 중 개인식별, 명예에 관한 사항, 범죄처분 처리결과 등	- 조직 직제 및 직무권한규정(사규) - 감사 감사직무규정(사규)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감사실 및 관리처 사업소 공통
5	상훈	공정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등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6	근무상황관리	직원의 연,병가 등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7	재산조회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자료	- 재산조회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공통
8	신원조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보안처 정보보안부 사업소 공통
9	부동산거래	부동산 계약, 거래, 매도, 매수자 및 과태료 대상자 등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공통
10	근태관리	휴가, 조퇴, 지참 등 직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공통
11	사택유지관리	직원 사택 입퇴실관리, 공과금 납부 내역, 사택수리보수, 수선충당금 등 사택 이용 직원의 개인적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12	주식관리	개인 또는 법인 주식 내역 및 매도, 매수 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13	범죄, 위법,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공통
14	급여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자료, 연말정산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용자 등) 내역, 연말정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4대보험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15	시험관리	시험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관리처
16	후생복지	건강진단 수검자의 개인별 수검결과, 대부금 및 대여금 신청 내역 등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17	시스템관리	- 시스템 운영 등록자료의 개인신상정보 - 행정전자서명 신청관련 신상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보안처 및 사업소 공통
18	정보통신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보안처 및 사업소 공통
19	환경민원 및 피해소송	환경민원 수리 및 피해보상, 소성 및 공탁 처리 등 공개 시 특정인의 개인 식별, 명예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사업소 공통
20	어업보상 관리	어업피해보상관련 피해보상금 및 소송 중인 정보와 관련 민원인의 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정치어업권보상규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사업소 공통
21	소방관련 법정안전관리자 선,해임관리	인사이동에 따른 본부 법정안전관리자 선,해임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식별정보 및 사생활 정보	관리처 및 안전품질처
이	하	빈	칸	

##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등 -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사업소 공통
2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및 특정업체에게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관리0500 제안업무규정(사규) - 관리0500 제안업무규정(사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사업소 공통
3	내부관리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	- 조직0100 직제규정(사규) - 조직0300 직무권한규정(사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공통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4	단체협약	법인, 단체 등 영업상 내부관리 자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공통
5	주식관리	개인 또는 법인 주식 내역 및 매도, 매수 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기획처
6	법인카드	법인카드 번호, 기간 등의 결재정보가 담긴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7	인감관리	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공개시 도용 등의 사고로 해당 업체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감증명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및 사업소 공통
8	출자회사 운영 및 관리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기획처
9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로 사전 공개시, 원활한 업무진행 저해 및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술 연구개발관리규정(사규) - 관리 제안업무규정(사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기획처
10	자산성 평가 및 운영전략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자료로 외부유출 시 해당 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술 연구개발관리규정(사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기획처
11	유연탄 통관 및 보험 업무	입항 및 하역과정 중의 통관 및 보험 가입 등에서 발생하는 비밀 정보 또는 공개 시 특정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세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운영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2	발전사 공동구매 및 협상	발전사 연료구매 과정 중의 협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공개 시 특정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및 발전운영처
13	외국환거래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유연탄 대금결재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및 사후관리 정보	- 외국환거래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운영처 및 사업소 공통
14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가입내역 및 재산 내역 등의 한국서부발전 재산관련 현황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운영처 및 사업소 공통
15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지원해주는 등에 대한 업체의 재산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국정과제추진실 및 사업금융부
16	사업정보 수집 및 분석	입찰공고, 정부기관, 해외주재원 등 내부 사업정보 수집 및 기초분석 등에 따른 정보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장의적 지식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외사업처
17	투자재원 관리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사업금융부, 해외사업처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 서
18	국외 신사업개발	국외신사업개발 과정중의 입찰수익률, 리스크 관리방안, 이사회 회의내용 및 사업개발 착수단계 과정중인 정보	- 기술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 상의 불이익 초래	사업금융부, 해외사업처
19	해외법인	- 해외법인 출자 방법 - 해외법인 세금규제 검토 - 현지법인 인원 선발 및 등록 과정중 의 정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 상의 불이익 초래	사업금융부, 해외사업처
20	산업재산권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기술권리 신청에 따른 소요비용, 자문, 기술 취득에 따른 정보	- 기술연구개발관리규정(사규)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법 - 상표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기술처
21	비유동자산 관리	비유동자산(토지,건물)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재산 처분 등 주요 재산관계 내용 중 공개 시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 상의 불이익 초래	관리처 사업소 공통
22	시운전 계획 관리	- 시운전종합공정 계획 문서 - 각종 계약자가 송부한 도면, 도서, 계약서 등 시운전 공정 관련 자료	- 보안업무규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기술처 및 사업소 공통
23	발전운영 데이터분석	사업소 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및 기타 사항 분석 자료	- 기술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 상의 불이익 초래	발전기술처 및 사업소 공통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및 사유	부서
1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 기술 연구개발관리 규정(사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 투기조장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처 및 사업소 공통
2	투자자산 관련 업무	광산개발 및 투자, 기타 해외사업 계약 관련 또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 시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자산재평가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사전공개시 부동산 투기조장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처 및 사업소 공통
이	하	빈	칸	